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505
------	------

2026. 3. 1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9일, 소영철 의원 등 10명
-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소영철 의원)

1. 제안이유

- 202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유통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및 테무(Temu)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에 불과하고, 협약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C-커머스(China Commerce)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해물

질 기준치 초과 제품, 물리적 안전기준 미달 제품 등의 유통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유통되는 위해제품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됨.

2. 조례안의 입법 배경

- 최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시장 진출 등으로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온라인 해외직구 방식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액 변동 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연간 합계액 (전년도 대비 증가율)	연간 합계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22년도	59,454 (13.1)	14,339	14,770	14,464	15,881
2023년도	68,158 (14.6)	15,319	16,519	16,433	19,887
2024년도	80,863 (18.6)	18,629	20,607	19,431	22,195
2025년도	85,080 ^{주1)} (5.2)	19,551	21,762	21,224	22,543 ^{주1)}

※ 주1) 2025년도 4/4분기의 해외직구액은 잠정 집계액이기 때문에 향후 해당 분기의 수치와 2025년도 연간 합계액이 변동될 소지 있음.

출처 : 국가데이터처,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중 “지역별/상품군별 온라인쇼핑 해외직접구매액” 가공

-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KC인증을 취득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 중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의 안전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반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1)

- 아울러 현행법²⁾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나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등을 권고·명령하거나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조사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반입되고 있음.
- 따라서 규격·품질·안전성 등(이하 “안전성 등”)에 있어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피해구제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온라인 해외직구 관련 상담이 접수되는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 국제소비자상담 접수 건수 ^{주1)} >

(단위 : 건, %)

구분	총 건수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거래’ 관련 상담접수 건수 (구성비)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거래’ 관련 상담접수 건수 (구성비)	기타 사항 관련 상담접수 건수 (구성비)
2021년도	14,086	4,621 (32.8)	9,465 (67.2)
2022년도	16,608	6,987 (42.1)	9,621 (57.9)
2023년도	19,418	11,798 (60.8)	7,620 (39.2)
2024년도	22,816	14,720 (64.5)	8,096 (35.5)

※ 주1)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중 해외직구 “동향분석”(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311) 가공

1) 가령 중국의 경우 자국 내부 유통 제품은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이 필수이나,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CCC 인증이 면제되고 있음. 참고로 CCC는 2002년에 도입된 중국의 인증 시스템으로, 가전제품·장난감·전기기계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환경 안전기준(납, 수은 사용 제한 등)·전자기 호환성 등을 인증하는 제도임. :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1696 (2005. 1. 23.) “’25년 해외온라인플랫폼 소비자보호 추진 계획”

2)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9조의3, 제10조, 제11조, 「관세법」 제246조의3 등.

- 한편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률로는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국내의 사업자’에 대한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의 사업자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규율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³⁾ ▶2024년 5월에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음.⁴⁾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전문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서

1.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하며 이하 ‘정부 등’)로부터 제공되는 위해제품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 또는 제한하고,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을 방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2. 정부 등 및 입점업체와 협력하여 소비자에게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3. 정부 등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24)과 제품 안전 누리집 등에서 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이 안전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4. 정부 등이 위해제품을 통보하거나 유통·판매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망을 제공한다.
5. 정부 등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해제품 등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받을 경우, 인터넷 주소(URL) 등으로 확인된 위해제품 목록을 가능한 신속히 삭제하고, 이행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2024. 3. 13, p.1~6

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외직구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을 마련한다”, 2024. 5. 13, p.1~6

6.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 등과 협력 범위를 사전협의하여 협력한다.
7. 정부 등이 위해제품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또한 안전기준 미준수, 리콜 등으로 인해 판매가 금지된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등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 자율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어떠한 법·제도 하에서도 체결 또는 체결 전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법적 권리와 의무 또는 그에 대한 포기로 해석되지 않을 것이며, 기존 법 구조에 대한 대체, 확장 또는 해석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본 협약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적 절차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다.
본 자율협약은 제품 안전과 관련한 협약 참여사업자와의 논의를 통해 협약내용을 개정한다.

- 다만 해당 협약은 자율협약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협약 상대방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협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다른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음.
- 이후에는 「제품안전기본법」(2025. 12. 개정),⁵⁾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025. 12. 개정),⁶⁾ “전자상거래법” (2026. 1. 개정)⁷⁾ 등이 개정되어 다가오는 2026년 6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까지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5) 법률 제21159호(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

※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제7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제9조의4 신설), ▶안전성검사를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것임(제10조의2 신설).

6) 법률 제21157호(2025. 12.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

※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제6조의2 신설),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제9조의2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음.

7) 법률 제21312호(2026. 1. 20. 일부개정, 2027. 1. 21. 시행)

※ 국내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제20조의5)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2024년도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선별하여 안전성검사 등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보도자료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 참고로 서울시가 2024년도에 1,6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172개 제품(10.6%)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도에는 23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검사와 46개 제품에 대한 위조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89개 제품(37.2%)이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41개 제품(89.1%)이 위조상품으로 판명됨.
- 아울러 ▶2024년도에는 판매차단 이후 재유통 여부 점검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1회 실시하였으나, 2025년도부터는 한국소비자원의 점검과는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판매 차단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와 6개월 후에 각각 1회씩 총 2회 추가 실시하여 위해제품의 재유통 및 확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음.
- 그 밖에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해외 온라인쇼핑몰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2024. 4~)하고, ▶안전성 검사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2024. 5.) 및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 참여(2025. 3.~)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국내·외 10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만족·소비자보호·피해발생 등 3개 분야를 평가·발표(2025. 11.)⁹⁾하는 등 시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 개요 >

- (목적)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 및 모니터링 사각지대 보완 (2020년 3월부터 운영)
- (참여기관) 공정거래위원회(주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서울시, 한국소비자원(간사)을 포함한 9개 기관

8) 2024년도에는 안전성검사만 실시하였으나, 2025년도부터 위조검사도 실시하였음.

9)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조사 결과, 해외직구 이용자 45.3% ‘안전성 우려로 구매 줄었다’”, 2025. 11. 7, p.1~5

◦ (주요 논의사항) 국내 유통되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합동 감시·공동조치, 참여기관 간 정보공유, 해외 위해제품 관리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검토 등

- 다만 서울시는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목적의 조례가 미비한 관계로 「소비자기본법」 제4조¹⁰⁾와 제6조¹¹⁾를 근거로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은 향후 관련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됨.

3. 조례안의 세부 내용

가. 조문 구성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조사·연구,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목적·정의·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안 제1조는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

-
- 10)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8. (생략)
- 11)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통신판매중개’, ‘통신판매중개자’, ‘온라인 위해제품’, ‘사업자’에 대해 그 의미를 정의한 것임.

< 안 제2조의 규정내용 >

규정	용어	정의내용
제2조 제1호	통신판매중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제2조 제2호	통신판매중개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제2조 제3호	온라인위해제품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유통되는 제품으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에 따른 규격·품질 및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유통되는 제품과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통되는 위조상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
제2조 제4호	사업자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 포함한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이 중 안 제2조제3호는 ‘온라인 위해제품’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유통되는 제품으로서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이하 “안전성 등 미달제품”)과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유통되는 위조상품(이하 “위조상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민의 생명·신

체·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정의함.

- 이는 조례의 핵심 개념인 온라인 위해제품의 구성요소에 실제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는 문제 사례인 안전성 등 미달제품과 위조상품을 반영함으로써 규율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실효성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1항),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온라인 위해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며(제2항), ▶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게 한 것임(제3항).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 피해의 발생 현황, 사회적·제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제품명 및 모델명, 위해의 내용, 유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등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 중 안 제3조제3항은 온라인을 통한 소비생활에서 안전취약계층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대상 맞춤형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고 배려하도록 한 「소비자기본법」¹²⁾ 과 「제품안전기본법」¹³⁾의 규정 내용에도 부합되는 입법 사례로 판단됨.

12) 「소비자기본법」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3)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제1항), 그 내용으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 및 피해 발생 현황과 향후 전망,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등, ▶피해 예방·구제 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협력체계 구축, ▶재원 조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제2항).

안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① 시장은 5년마다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구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 및 피해의 발생 현황, 향후의 전망
 3. 제5조에 따른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또한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수립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항), 이는 신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여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로 볼 수 있음.

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 아울러 안 제4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4항),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제5항), 이는 시행계획 수립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지원에 실효성을 갖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라. 시험·검사·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안 제5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제품의 안정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조사와 그 후속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검사와 그 후속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의 규정 내용과 구조 >

규정 내용	구조
안 제5조(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등)	조 번호와 제목
<p>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나 국공립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규격·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 요청 등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제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조사와 그 후속조치
<p>③ 시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제3항의 조사·검사 결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p>	‘부정경쟁행위 등’(위조상품 포함)에 관한 조사·검사와 그 후속조치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⑤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조항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직권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나 국공립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리고 안 제5조제2항은 제품의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사·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5조제3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부정경쟁행위 등’ 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최소 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 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 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아목과 파목은 제외)¹⁴⁾와 ▶같은 법 제3조·제3조의2제1항·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중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파. (생략)

부정경쟁행위에는 위조상품의 판매·반포·수입·수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안 제5조제4항은 조사·검사 결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위반행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제5항은 시정 권고 미이행 시 위반행위의 내용과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5조는 시장이 시험·검사·조사와 그 후속조치¹⁵⁾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새로운 권한을 창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온라인 위해제품 관련 조례에 동일한 취지로 반영(규정)한 것임.

< 조례안 제5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의 규정 >

「소비자기본법」 제17조(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등)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험·검사기관이나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주1)}

- ①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 ⑥ (생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 또는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주1)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는 당초 1998년 12월 일부개정(1999. 1. 시행)을 통해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등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당시의 개정이유 참조).

15) 공표, 소비자 권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요청 등

- 이는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부여된 권한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행사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으로써, 시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온라인 위해제품에 대한 대응의 법적 정당성을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안 제6조는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임.

안 제6조(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라인 위해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2. 온라인 위해제품에 대한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3.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4.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창구 운영
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피해 구제 절차 연계 지원
6. 그 밖에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및 홍보,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교육과 같이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도,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창구 운영, 피해 구제 절차 연계 지원 등 구제 지원을 위한 사업(제4호 및 제5호)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제6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음.

마. 기타 행정력 보완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규정(안 제7조~안 제9조)

- 안 제7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와 그에 따른 피해 발생 현황, 서울시의 예방·지원 시책의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과 국공립검사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임(제2항).

안 제7조(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 ①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와 그에 따른 피해 발생 현황, 서울시의 예방·지원 시책에 따른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이는 서울시가 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 등이 행정여건상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선별)조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와 피해 발생 현황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용역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의 행정력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이해됨.
- 안 제8조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안 제8조제2항은 위탁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방법 등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한 것임.
- 안 제9조는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소비자단체는 물론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8조(사무의 위탁)

-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소비자단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4. 종합의견

- 동 조례안은 디지털 거래환경의 변화로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가운데 ‘안전성 등 미달 제품’ 과 ‘위조상품’ 을 포함한 위해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임.
- 서울시의 주관부서(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제품 등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되어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다만 동 조례안은 개별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에 대한 강제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온라인 위해제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긴밀히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영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505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소영철, 경기문, 김태수,
김혜영,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영한, 임춘대,
황유정 의원(10명)

1. 제안이유

- 202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유통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및 테무(Temu)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에 불과하고, 협약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C-커머스(China Commerce)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제품, 물리적 안전기준 미달 제품 등의 유통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유통되는 위해제품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다.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라.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마.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바.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라인 위해제품(危害製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판매중개”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온라인 위해제품”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유통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을 말한다.
 -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에 따른 규격·품질 및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유통되는 제품
 -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통되는 위조상품

4. “사업자”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 포함한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 피해의 발생 현황, 사회적·제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제품명 및 모델명, 피해의 내용, 유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등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5년마다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구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 및 피해의 발생 현황, 향후의 전망
3. 제5조에 따른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6.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7.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나 국공립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규격·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 요청 등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조사·검사 결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⑤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라인 위해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2. 온라인 위해제품에 대한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3.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4.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창구 운영
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피해 구제 절차 연계 지원
6. 그 밖에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와 그에 따른 피해 발생 현황, 서울시의 예방·지원 시책에 따른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

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소비자단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여부	판단 내용
1	제3조(시장의 책무)	×	[규정단일 미영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한 규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¹⁾ 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규정단일 미영향] 서울특별시 공장경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므로 별도 비용발생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3	제6조(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	○	[유사사례 토대 추계] 일부 사업의 경우 가추진하고 있으나, 시민감사단은 미운영하고 있어 관련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사업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자체추계 하였음 ⇒ 총 27,775천원 소요예상(연평균 5,555천원 소요)
4	제7조(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	[통상적 사례 토대 추계] 실태조사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통상적 사례를 토대로 자체추계 하였음 ⇒ 총 138,890천원 소요예상(연평균 27,778천원 소요)
5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재정소요 영향 미미] 협력체계 구축 규정은 통상 비용 수반요인 ²⁾ 이 없거나 있더라도 영향이 미미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그 외 규정의 경우 별도의 비용수반요소가 없을 것으로 보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시민감사단 운영 사업비용(안 제6조)
- 실태조사 실시비용(안 제7조)

1) [노력의무규정 특성] 시장의 책무규정은 통상 선언적 조항(가령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 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제외함

2) [재정소요 영향 미미] 협력체계 구축(Ex. 업무협조 MOU)의 경우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일회성 소액지출인 경우가 많아 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Ex. 현수막, 입간판, 업무 협약서 제작 등)되므로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나. 전제

- (감시단)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 (인원) 인원은 서울시 유사사례를 토대로 1,000인을 가정³⁾
 - (임기) 1년 전제(매년 임명)
 - (소요항목) 위촉장 제작비용(1인 5,500원), 표창장 제작비용(연 10명, 1인 5,500원) 등⁴⁾
- (실태조사) 학술용역 단가 활용 및 유사 실태조사 사례⁵⁾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7,778천원 가정
 - (주기) 실시주기가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장상황 변화⁶⁾ 고려하여 매년 1회 실시를 임의로 가정
- (발생기간) 2027년부터 비용 발생, 매년 소요, 추계기간(2027~2031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예상
- (미고려) 향후 실제 사업추진 형태(현재 구체적 정책 미수립),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7년~2031년)

라. 방법

- (자체추계) 서울시 유사사업 및 통상적 실태조사 단가 등을 토대로 자체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총 166,665천원(연평균 33,333천원 × 5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시민감시단 운영 비용(안 제6조)	5,555	5,555	5,555	5,555	5,555	27,775
	○ 실태조사 실시 비용(안 제7조)	27,778	27,778	27,778	27,778	27,778	138,890
	소계(a)	33,333	33,333	33,333	33,333	33,333	166,665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33,333	33,333	33,333	33,333	33,333	166,665

4. 덧붙이는 의견

- [추계액 성격] 예시적·제안적 금액
 - 입법취지 및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해당 안은 선제적 입법⁷⁾이므로 구체적 정책수단, 집행 계획 등이 정해진 바 없어 서울시 유사사업 및 실태조사 단가관련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재정분석과 에서 정책 추진형태를 임의로 가정하여 자체추계하였음

3) [서울시 유사사업 고려] “인터넷”이라는 공간적 측면에서 동일성이 있고, 불법 또는 위해를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사업>을 고려하여 1,000명(통상적 인원고려)을 임의가정함

4) [관리용 플랫폼 구축 발생가능성] 데이터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관리용 플랫폼 구축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나, 시스템 구축 특성상 규모별 소요비용 차이가 크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현재로서는 객관적·합리적 추계가 곤란함

5) [중앙부처 유사 실태조사 고려]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17,800,000원, 조사 기간 2달 가량)를 실시한 바 있어 이를 고려함

6) [조사주기 일반적 특성 및 조사대상 변화추세 고려] 실태조사 주기는 통상적으로 별도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책적 필요에 의해 실시하고 있어 해당 사안별로 주기가 상이할 수 있으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시장상황이 급변한다는 점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어 매년 실시를 임의가정함

7) [예산마련 추가논의 필요]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입법조치이나,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정책수단 결정 및 이를 실현할 예산 마련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추계액 활용유의] 대략적 규모 파악용 자료로 활용권장

- 향후 집행기관에 의해 해당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경우 시민감시단 운영방식, 실태조사 규모, 주기 등(다양한 지출결정요인)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주 무 관 손 제 승

☎ 02-2180-7935

e-mail : smclt22@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시민감시단 운영 사업비용(안 제6조)
- 실태조사 실시비용(안 제7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총 166,665천원(연평균 33,333천원 × 5년)

나. 연도별 소요비용 = 33,333천원

= ① 시민감시단 운영 + ② 실태조사 비용

= ① 5,500천원 + ② 27,778천원

① 시민감시단 운영 비용⁸⁾ = 5,555천원

- 위촉장 제작비용 = 5,500천원

= 1인 위촉장 제작비(P) × 감시단 인원(Q)

= 5,500원 × 1,000명

- 표창장 제작비용 = 55천원

= 1인 표창장 제작비(P) × 표창대상 인원(Q)

= 5,500원 × 10명⁹⁾

② 실태조사 비용 = 27,778천원

= 인건비 + 제본비 + 기타운영비

= (인력 전체 보수월액 합¹⁰⁾ × 3개월) + (제본단가 × 100부) + (기타 운영비)

= (8,626천원 × 3개월) + (10천원 × 100부) + (300천원 × 3개월)

= 25,878천원 + 1,000천원 + 900천원

8) [사업운영 방식 임의가정] 시민감시단 운영방식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위촉장 수여, 시장표창 수여, 봉사활동 시간 인증, 우수활동자 문화상품권 수여 등과 같은 통상적 방식 추진을 가정하였음

⇒ 우수활동자 문화상품권 지급은 보다 적극적인 감시활동 유인책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실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실시될 가능성이 있고 실적에 따라 소요비용 변동의 폭이 크므로 미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객관적·합리적 추계가 곤란함(따라서 향후 집행기관의 정책적결정 선행필요)

9) [유사사례 통상적 표창대상 인원고려]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해당사업을 시행할 당시 매년 표창대상인원이 달라지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10명의 정도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의가정함

10)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활용] 책임연구원(3,784천원) + 연구원(2,902천원) + 연구보조원(1,940천원) 지급 가정

※ 자료 :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